

광명시 광명동굴 기념품 판매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6. 9 훈령 제35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 광명동굴의 로고 및 캐릭터 등을 널리 알리고 광명동굴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판매하는 기념품의 제작·판매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기념품”이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광명동굴 방문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시에서 직접 제작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상품개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동굴의 로고 및 캐릭터 등을 활용한 광명동굴의 특색을 살린 상품을 적극 개발한다.

제4조(기념품 제작 및 계획수립) 시장은 매년 기념품 판매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기념품 제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념품 제작 예산액
2. 제작할 기념품 종류
3. 기념품 판매가격 및 판매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념품 판매장소) 기념품의 판매 장소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1층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판매장소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기념품 가격 및 판매수입금 관리) ① 기념품의 판매가격은 소비자 가격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되, 동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② 기념품 판매수입은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하고, 그 날 판매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재고조사 및 유통불가능 기념품에 대한 처리) ① 기념품의 정확한 판매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통 및 보관 중에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기념품은 폐기할 수 있다.

광명시 광명동굴 기념품 판매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③ 폐기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념품 불용품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다.

제8조(기념품 보관 관리) ① 기념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관리한다.

- ② 기념품 판매관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념품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념품 판매대장에 수불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념품 불용품 폐기조서

장 소				
일 자	20			
집 행 자	직위·직급		성명	인
입 회 자	직위·직급		성명	인
품 명	단위	규격	수량	금 액
폐 기 방 법				
폐 기 사 유				
기 타 사 항				

[별지 제3호 서식]

기념품 판매대장

일 자	20 . . .
총판매량	
총판매액	

결재	주무관	팀 장	과 장

[품목별 현황]

연번	품 명	판매 가격(원)	수 량			총 판매액 (원)	비고
			입고량	판매량	잔 량		
계							
1							
2							
3							
4							
5							
6							
7							
8							
9							
10							

[기타 특이사항]